

급여지급 신청서(DC / 기업형IRP)

담당자	책임자

주식회사 우리은행 앞

1 기본 정보

사용자(기업)명*	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	사업자등록번호*	110-82-10500
등록방법*	☒ 개별 등록 ☐ 일괄 등록(신청인원: 명)	제도구분*	☒ 일반형DC ☐ 표준형DC ☐ 기업형IRP

※ 일괄등록 신청 시 EXCEL 파일 추가 제출 가능

2 개별 등록

1 공통 입력 사항 [64414]

가입자명*		주민등록번호*		임원 여부*	☐ 임원 ☒ 근로자
신청구분*	☐ 퇴직 ☐ 중도인출	청구구분* (퇴직신청 시)	☐ 일시금 ☐ 개인형IRP 이전	급여신청유형* (퇴직신청 시)	☐ 퇴직일시금 ☐ 전체기업반환
IRP이전 예외사유	☐ 근퇴법 시행이전 퇴직 ☐ 만55세 이후 퇴직 ☐ 퇴직금 300만원 이하 ☐ 사망일시금 ☐ 출국 외국인				
입사일자*		퇴직일자*		현물이전*주1)	☐ 신청 ※ 우리은행IRP로 ☐ 미신청 이체 시 신청 가능
중간정산일주2)		중간정산지급일주2)		예약지급일(선택)	

③ 예약지급일 : 상품 매도기간 확인 후 정상 이체일보다 늦은 날짜로 선택 가능

2 지급 신청 정보

퇴직급여 총액*	납입대상 기업부담금	원	※ 기존 기업부담금 외 추가 부담금 있을 경우 ③ '미납 부담금' 필수 작성
차감항목 [기업반환금]	☐ 일부 기업반환	반환금액 :	원
	☐ 국민연금 전환금주3)	전환금액 :	원
	☐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주4)	한도금액 :	원

③ 기업 반환 요청 시 당행에 등록된 기업 반환 계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3 분리과세 정보 [선택 기재]

분리과세 사유	☐ 가입자의 사망 ☐ 해외 이주 ☐ 3개월 이상 요양 ☐ 가입자의 파산/개인회생절차 개시 ☐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의 임원 치료 ☐ 기타		
3개월 이상 요양 추가정보	의료비 및 간병인 금액	원	휴직/휴업 개월수 개월

③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저율 분리과세【소득세법 제14조, 시행령 제20조의2】

부득이한 사유(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)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율(3.3~5.5%, 지방소득세 포함) 적용

③ 적용대상 :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원금 및 개인부담금 운용수익

4 중도인출 신청 [선택 기재]

중도인출 구분	☐ 전액 ☐ 일부	일부 중도인출금액	원
매도상품지정 (선택 사항)	상품명 (일부 중도인출 신청 시)		신청금액
	①		원
	②		원
	③		원
중도인출 사유	☐ 무주택자 주택 구입 ☐ (가입자 본인)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		
	☐ 무주택자 주택 전세/임차보증금 부담*(1사업장 1회) ☐ (가입자 본인) 파산선고		
	☐ 가입자·배우자·부양가족의 6월 이상 요양(질병·부상) ☐ (고용노동부 고시) 재난으로 인한 물적·인적 피해		
	의료비를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 12.5% 초과 부담		

③ 매도상품지정 : 특정 상품을 매도하여 중도인출 요청하는 경우 작성하며, 미작성 시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4조에 따라 매도됩니다.

③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 전세/임차보증금 부담의 경우 ⑥ 사용자(기업) 확인 필수 작성 바랍니다.



③ 추가 입력 정보

미납 부담금 ^{주5)} [추가 입금액]	☐ 추가 입금액 있음	퇴직연금(법정) 추가 입금액	원	입금예정일	
	☐ 추가 입금액 없음				
중간 정산 특례 적용	■ 당해연도 이전에 해당 회사에서 지급 받은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내역 합산과세 여부				
	☐ 합산과세 적용	중간정산(중도인출) 기산일			
		기지급 총 중간정산금액 ^{주6)}	원		
		기납부 퇴직소득세 ^{주7)}	원		
☐ 합산과세 미적용					

- ㉟ 미납 부담금 입금예정일 : 영업점 지급등록 완료 확인 후 DC/기업형IRP 계좌에 추가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
 ㉟ 당해연도 기 중도인출 내역이 있는 경우 무조건 합산과세 적용됩니다.

④ 입금계좌 정보(택 1)*

개인형IRP 계좌 (법정의무)	이전후 퇴직연금사업자	이체 금융기관	개인형 IRP 계좌번호

- ㉟ 입금계좌가 우리은행^{주8)}이 아닌 타금융기관 개인형IRP일 경우 통장 사본 또는 가입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㉟ 개인형IRP 內 세액공제용 개인부담금이 입금되어 있거나 입금 예정인 경우, 퇴직금만 일부 해지 불가능합니다.

입출금 계좌	이체 금융기관	계좌번호	예금주(본인 계좌 원칙)

- ㉟ 만55세 이후 퇴직, 퇴직금 300만원 이하, 가입자 사망, 출국 외국인 등 개인형IRP 의무이전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택 가능

⑤ 퇴직자 동의^{주9)}

사용자(기업)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아래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
■ 본인은 사용자(기업)와 합의에 의하여 법정지급기한(14일)을 초과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.	
가입자(퇴직자명):	(서명)

⑥ 사용자(기업) 확인사항 (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 전세금/임차보증금 부담의 경우만 ✓ 표시 필수)

☐ 회사는 해당 가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주택 전세금/임차보증금 부담을 이유로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실시한 바 없음을 확인합니다.

■ [첨부 서류] 체크 [✓]

- ☐ 퇴직연금 중도인출 확인서(신청인 작성)
 ※ 중도인출 사유별 증빙서류 일체 포함
☐ 퇴직연금 중도인출 체크리스트(은행 작성)
☐ 「연금보험료 등의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」
☐ 분리과세 사유별 증빙자료
☐ 다른 금융기관의 IRP로 급여 이전
 - 가입자 IRP 계좌사본(IRP 확인가능서류)
☐ 출국 외국인 근로자 IRP 이전 예외① ② 모두 징구
 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자:
 외국인등록증(여권) 비자 C-4/E-1~10/H-2 확인
 ② 퇴직 후 국외 출국:
 출국항공권(사본) 또는 해외출국확약서
☐ 사망에 의한 지급
 - 대표상속인 지정 확인서 外
 ㉟ 자세한 사항은 작성방법 참조

20 년 월 일		
가입자* (퇴직자)	성 명	서명/날인
※ 가입자정보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지급예정일 안내문자 발송(중도인출건 제외)		

기업명*	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	서명/날인
------	------------	-------

접수자*	성명 / 행번	접수일자
------	---------	------



■ 첨부 서류

구분	업무 내용	필요 서류
분리과세 신청	☞ 가입자의 사망	▪ 사망확인서류 : 기본증명서
	☞ 3개월 이상 요양 또는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	▪ 의사의 진단서 및 의료비영수증(필수) ▪ 간병인 인적사항(이름, 생년월일 등) 포함된 간병료 영수증
	☞ 해외 이주	▪ 해외이주 신고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
	☞ 가입자의 파산	▪ 파산선고 결정문
	☞ 가입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	▪ 개인회생 개시결정문
중도인출 신청	☞ 중도인출에 의한 지급 증빙서류	▪ 퇴직연금 중도인출 확인서(신청인 작성) ▪ 중도인출 체크리스트(은행작성) ▪ 중도인출 사유별 증빙서류
제3자 수령(상속)	☞ 사망에 의한 지급 증빙서류	▪ 가입자의 기본증명서(사망일자 기재) ▪ 가입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속인의 범위 확인) ▪ 퇴직연금 대표수익자 지정합의서(인감증명서 포함) ▪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(선택사항) ▪ 대표상속인의 통장사본(당행계좌 제외)
퇴직금 합산과세	☞ 중간정산 퇴직금 합산과세 서류	▪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(해당 년도)

■ 작성 방법

① 공통 입력 사항

- 주1) 현물이전 : DC 가입자 퇴직 시 운용자산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개인형 IRP로 이전하는 것
 - 전 상품(정기예금, 발행어음, ELB, 펀드, ETF, GIC) 현물이전 가능하며, 입금계좌가 우리은행 개인형IRP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 - 개인형IRP 입금 완료까지 신청일 포함 2영업일 소요
- 주2) 중간정산일 및 중간정산지급일 : 근로자가 재직 중 중간정산을 받았을 경우 정확한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중간정산일과 중간정산지급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

② 지급 신청 정보

- 주3) 국민연금 전환금(회사납입액)은 개인형IRP 이전 시에도 기업 반환 신청 가능. 단, 기업 반환 시에는 전환금액만큼 근로자가 부담하여 개인형IRP로 추가 입금을 해야 과세이연이 완료되므로 주의
- 주4)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금액 계산방법(① + ② + ③)

①	2011.12.31.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한도
②	2019.12.31. 이전 3년간의 연평균급여 환산액 × 10% × 2012.1.1. ~ 2019.12.31.까지의 근속연수 × 3배
③	퇴직 직전 3년간의 연평균급여 환산액 × 10% × 2020.01.01. 이후 근속연수 × 2배

- 단, 회사에서 원천징수 완료한 퇴직소득(중간정산, 추가 퇴직소득 등)은 차감 후 산출합니다.

③ 추가 입력 정보

- 주5) 지급 예정일 전 회사가 미납 부담금(추가 입금액)만큼 추가 입금해야 지급 처리가 완료되며, 기일 내 미입금 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주6) 기지급 총 중간정산금액 : 중간정산 합산 세액정산 특례 적용을 원하는 경우, 근로자가 당해 회사에서 재직 중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 내역(세전금액)을 모두 합산하여 입력하여야 함
 - 중간정산 당시 「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」으로 지급받은 세전 퇴직급여액 확인
- 주7) 기납부 퇴직소득세 : 중간정산 합산 세액정산 특례 적용을 원하는 경우, 근로자가 당해 회사에서 재직 중 중간정산 받을 당시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액(지방소득세 제외)을 모두 입력
 - 중간정산 당시에 받은 「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」으로 퇴직소득세액 확인

④ 입금계좌정보(개인형IRP)

- 주8) 우리은행 개인형 IRP 운용·자산관리 수수료 안내

인터넷·모바일뱅킹 신규	수수료 면제.		
	단, 최초 입금일로부터 1년 경과 전 他 금융기관 이전 또는 중도해지 시 전체 기간 은행 방문 신규 수수료를 적용		
은행 방문 신규		개인부담금	퇴직금
	1억 미만	0.28%	0.45%
	1억 이상	0.25%	0.38%

⑤ 퇴직자 동의

- 주9) 사용자와 퇴직자가 법정 지급기한(14일)을 초과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 작성

